

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 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□ 제안이유

- 적용시한이 만료됨(1991. 12. 31)에 따른 시한연장임
- 목적 :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과세와 관련된 국민생활의 안정지원

□ 주요골자

- 부동산 등기시에 제출된 검인계약서중 개인간의 거래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불균일과세
- 경감율 : 토지와 건축물의 계약서상 금액에서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40경감

□ 근거법령

-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
-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
-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